

##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11

(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부과상 허 길 중

나. 제안사유

- 광주민주유공자가 5·18민주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 
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 범위를 확대하는 전라남도에서  
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”로  
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”를 “5·18민주화운동부상자”로 명칭을 변경함(안  
제2조 제2항)
-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  
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만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였던 것을 기업  
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 
협동화사업단지외에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완  
화(안 제11조 제2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  
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는 감면 조례안으로서
-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  
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 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”로 하고, “광주민주화운동부상사”를 “5·18민주화운동 부상사”로 한다.

제11조 제2항중 “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”를 “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

